

RESCINDED

학생의 권리 타이틀 나인(Title IX)은 학교에서
성희롱¹ 및 성폭행을 금지합니다

미국 법령 제20편 1681조(이하참조)인 1972년 개정교육법 타이틀 나인(이하 “타이틀 나인”)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입니다.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군,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이하 “학교”)은 반드시 타이틀 나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타이틀 나인에 의하면, 성별로 인한 차별 대우는 성희롱 또는 강간, 성폭력, 성적구타 및 성적 강요와 같은 성폭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성희롱 및 성폭행과 관련해 타이틀 나인이 요구하는 구체적 사항에 관한 추가 정보입니다.

성희롱 및 성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의 책임은 무엇인가?

- 학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가 적대적인 환경을 초래하는 성희롱 또는 성폭행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성폭행의 사례를 알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제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
-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학생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학교에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가 성희롱 또는 성폭행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보아 알고 있어야 할 경우,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희롱 또는 성폭행 주장에 대한 범죄 수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학교가 타이틀 나인의 요건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불만을 해결해야 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며 불평을 해소 하는 데 학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모든 학교는 성 차별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배포해야 한다
 - 학교는 타이틀 나인에 의거해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통보는 반드시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이용 가능한 상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 이 정책은 반드시 타이틀 나인과 관련된 질문이 학교의 타이틀 나인 코디네이터나 민권사무소(OCR)에 회부될 수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 모든 학교에는 타이틀 나인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
 - 모든 학교는 최소한 1명의 직원을 임명해 학교의 타이틀 나인 준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 직원을 종종 타이틀 나인 코디네이터라고 부른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 및 직원들에게 타이틀 나인 코디네이터의 이름이나 직함 그리고 연락 정보를

¹ 본 문서를 통해 사용된 “성희롱”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르게 언급하지 않은한 성폭행을 포함합니다.

RESCINDED

통보해야 한다.

- 코디네이터의 책임에는 모든 성 차별 불만 제기에 대한 감독 그리고 불만 제기의 검토 중 나타나는 반복적인 또는 체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확인 및 대처가 포함된다.
-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이 성 차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타이틀 나인에 의거해 학교는 학생들이 성희롱 또는 성폭행에 대한 불만을 포함한 성 차별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사유 제기 절차를 확립하고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는 정규 징계 절차를 사용해 성 차별 불만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징계 절차는 성 차별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
 - 모든 불만 고소인은 자신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는 불만을 충분하고, 신빙성 있고,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권리, 증인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그리고 양측 당사자가 동일한 항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모든 고소인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간에 대해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a) 학교는 불만에 대해 완전한 조사를 수행한다; (b) 당사자들은 소송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는다 (c)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모든 고소인은 소송이 증거 우세의 표준(즉,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권리가 있다.
 - 모든 고소인은 소송 결과에 대해 서면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연방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징계 절차에 대한 일부 정보의 공개가 제한을 받지만
 - 제재가 피해를 당한 학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 학교는 고소인에게 가해자가 받은 제재에 대한 공개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명령,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령, 또는 다른 학급이나 다른 기숙사로 이동해야 한다는 명령을 포함한다.
 - 추가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클리리 법(Clery Act-미국 법령 제20편 1092(f)조)에 의해, 제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가능한 성범죄에 관한 제도적 법절차 결과는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은 고소인이 서면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비공개 동의서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불만 사유 제기 절차는 일부 종류의 성희롱 불만 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방법(예; 중재)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어느 때라도 비공식 절차를 종료하고, 정식 소송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가능한 성폭력이 관련된 소송의 경우, 중재 절차는 적합하지 않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는 어느 학군,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시는 경우, (800) 421-3481 로 미국 교육부 민권 담당국(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에 전화하시거나 ocr@ed.gov 를



RESCINDED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불만 제기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